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141
----------	-----

제출년월일 : 1992. 11. 2.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92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91년도에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하였으나.
- 주요사업의 추가 시행등으로 공유재산의 취득 및 매각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되어 이에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도의회의 승인을 구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공유재산의 취득 및 매각

가. 재산의 취득

- 단양마늘시험장 부지 매입과 연구실 신축

- 시험장부지 매입 : 단양군 어상천면 대전리 640외 27필지, 34,868㎡

- 연구실 신축 : 단양군 어상천면 대전리 653 - 1, 660㎡

나. 재산의 매각

- 단양 매포 - 제천간 도로공사로 인한 도로편입토지 매각
- 단양군 매포읍 고양리 195 - 6 , 707 m²

3. 제안근거

-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및 39조
-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9조

4. '9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별 첨

5. 관계법령발췌 : 별 첨

'9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일 반 회 계

도 유 재 산 관 리 계 획

1992년 도 관 리 계 획 총 괄 표 (7 - 1)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 수	수 량	금 액	건 수	수 량	금 액	건 수	수 량	금 액	
취 득	계	토 지 건 물 기 타				1 1	34,868 660	231,500 263,489	1 1	34,868 660	231,500 263,489	
	1. 매 입	토 지 건 물 기 타				1 1	34,868 660	231,500 263,489	1 1	34,868 660	231,500 263,489	
	2. 교환으로 취득	토 지 건 물 기 타										
	3. 기 타 취 득	토 지 건 물 기 타										
처 분	계	토 지 건 물 기 타				1	707	707	1	707	707	
	4. 매 각	토 지 건 물 기 타				1	707	707		707	707	
	5. 양 여	토 지 건 물 기 타										
	6. 교환으로 처분	토 지 건 물 기 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 지 건 물 기 타										

1992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 (7-2)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계			35,528	494,989				
1	토지	단양군 어상천면 대전리 640 외 27 필지	34,868	231,500	하반기	단양마늘시험장 부지매입	단양군 어상천면 대전리 837 송원외리 12명	
2	건물	단양군 어상천면 대전리 653 1	666	263,489		단양마늘시험장 연구실 신축	충 청 북 도	

1992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 (7-4)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매각대상수량	과표또는 평가액	매각시기	매 각 사 유	매수희망자 주소 성명	비고
	지목	소 재 지	일단의수량						
	토지	단양군 매포읍 고양리 195 -6	707	707	707	하반기	단양매포 제천간 도로 공사로 인한 도로편입 토지 매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계	토지 건물 기타		707	707	707				

관 계 법 령 발 취

지 방 재 정 법	지 방 재 정 법 시 행 령
제 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 관리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그 관리처분결과를 심사, 분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계획과 처분결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 도지사에게, 시, 도에 있어서는 내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 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 법 제 7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처분결과의 보고범위, 서식등에 관하여는 내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관 계 법 령 발 취

공 유 재 산 관 리 조 례	공 유 재 산 관 리 조 례 시 행 규 칙
제3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받은 폐천부지 취득과 등 재산을 양여목적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처분 하였을 경우에는 재산의 소재지·지목·면적과 가격을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일괄하여 지방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88.5.19) 제3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공유재산을 취득·처분·교환·대부 및 사용허가등을 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요청할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서식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9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서등)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3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6호 서식)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7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8호 서식) 5. 교환계획서 (별지 제19호 서식) (개정 '88.5.27)